

2023년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2. 7.(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30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04건(안건번호 제2023-250519호~25202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50519호~250527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50528호~250533호는 블로그 및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50534호~25202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1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30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이숙형 부장: 제2023-301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이숙형 부장: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 내지 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3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이 '♥♥♥♥♥'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0건임.

(순번 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임.

(순번 1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에서 웹소설 ‘♣♣ ♣♣’을 판매 중임.

순번 10번 내지 15번의 7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0번 내지 1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 내지 1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6번 내지 1,50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210건임. 모

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10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2화 전체분량을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27.부터 ENA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3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1화~12화 전체분량을 1,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3.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독전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36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독전2'의 1시간 56분 전체분량을 3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7.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6번 내지 1,50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6번 내지 1,504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 내지 1,50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50519호~25052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50528호~25053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50534호~25202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3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2. 21.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